

2005. 11. .

# 條例案件審查報告書

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産業建設委員會

# 조례안건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안 건 명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충주시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2005. 11. 9	2005. 11. 9	2005. 11. 14	2005. 11. 14	친환경 농산과장

## 2. 제안설명요지

- 충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생산품에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하여 생산품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받고
- 생산자에게는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고품질의 물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등 생산품 전반의 경쟁력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함

## 3. 주요내용

-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생산품의 범위를 정함  
(안 제2조 제1호)

- 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공동상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4조 내지 제13조)
- 공동상표의 사용신청, 부여절차, 사용기간, 사후관리 및 사용권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6조 내지 제20조)
- 공동상표의 모양과 규격을 정함 (안 별표1)
- 공동상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안 별표2)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공동상표의 사용은 충주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축·임산·가공·공산물 등에 대한 품질인증을 통하여 충주생산품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소비자 신뢰확보, 경쟁력우위를 위하여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사업임
-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은 공동상표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사기준을 두어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하는 일과 생산품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는 일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하겠으며

-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를 위한 심사기준, 품질관리원에 대한 자격과 위·해촉 임기 등의 기준이 마련 되어야 할 것임
- 조례안 제2조제1호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의 생산품의 범위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가공식품, 공산물, 서비스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조례안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충주지역농업유통정보센터』는 농업분야에만 한정하도록 규정하여 이는 조례의 공동상표를 만드는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조례안 제23조의 조항제목과 조 본문의 “농업”을 “생산품”으로 하여 농산물이외 기타 생산품에 대해서도 유통정보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5. 질의답변 요지

▶ 질의 : 공포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지?

○답변 : 최대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슴

## 6. 심사결과 : 수정의결

▶ 사유 : 농산물이외 기타 생산품에 대해서도 유통정보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수정

7. 붙임 : 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

